



(:)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8

1 <개정 2009. 5. 1.>

1 ()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2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12. 26.>]

2 2()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9. 22., 2016. 12. 26.>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9.>

[전문개정 2009. 5. 1.]

[제2조에서 이동 <2016. 12. 26.>]

3 ()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6.>

[전문개정 2009. 5. 1.]

3 2()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12.]

3 3() 영 제5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중유(동·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연료로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7.]

2

- 4 ()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 5 ()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유탄기유·유탄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유탄기유·유탄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 6 ()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1.]

[제목개정 2010. 12. 16.]

7 ()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6., 2011. 12. 30.>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게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5. 1.]

8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 ④ 삭제<2010. 12. 16.>
-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0.>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9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9 2()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삭제<2015. 7. 29.>

②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2.>

1.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 9. 22.>

[본조신설 2010. 12. 16.]

10 ()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11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9.]

12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이하 “투자내용 확인 서류”라 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4. 8. 12.>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7. 10. 19.>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7. 10. 19.>

⑨ 제1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3. 3. 23., 2017. 10. 19.>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7. 10. 19.>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3. 3. 23., 2017. 10. 19.>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 13**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7. 10. 19.>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3. 3. 23., 2014. 8. 12., 2017. 10. 19.>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3. 3. 23., 2014. 8. 12., 2017. 10. 19.>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전문개정 2009. 5. 1.]

- 14** ()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7. 10. 19.>
-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7일

[전문개정 2009. 5. 1.]

15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국제석유거래업·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제2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3. 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7. 10. 19.>

[전문개정 2009. 5. 1.]

16 ()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9.>

[전문개정 2009. 5. 1.]

17 ()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2015. 7. 29., 2017. 10. 19.>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5. 1.]

1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삭제<2010. 12. 16.>

[전문개정 2009. 5. 1.]

1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19 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3. 3. 23., 2017. 10. 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09. 5. 1.]

19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4.]

3

20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비축·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8. 12.>

1. 옥외소화전
2. 물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그 밖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1.]

2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22 ()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5. 1.]

4 • <개정 2009. 5. 1.>

23 (•)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9.>

[전문개정 2009. 5. 1.]

23 2(가)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영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본조신설 2019. 3. 28.]

24 (가)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25 (•)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25 2()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 ③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6.]

26 (.)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프로필렌
2. 유허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허를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전문개정 2009. 5. 1.]

5 <개정 2009. 5. 1.>

27 ()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6

28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5. 1.]

29 ()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30 ()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31 ()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32

[제46조의2로 이동 <2012. 5. 14.>]

33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할 것. 다만,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에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삭제<2017. 10. 19.>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품질보정 일자, 품질보정행위의 장소, 품질보정에 사용한 제품의 명칭·수량 및 품질보정 방법 등 품질보정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통지하고 품질검사를 받을 것

[전문개정 2009. 5. 1.]

33 2()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34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5. 1.]

35 ()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7 <개정 2009. 5. 1.>

36 ()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09. 5. 1.]

37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0.>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38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

39 ()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1. 삭제<2010. 12. 16.>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전문개정 2009. 5. 1.]

40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1.]

- 41 ()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 [전문개정 2009. 5. 1.]

- 42 ()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제14조”는 “법 제34조·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16., 2012. 5. 14.>
- [전문개정 2009. 5. 1.]

- 43 ()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5. 1.]

- 43 2() ①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 ② 영 별표 3 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목번호”란 “1516.20-2090”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8. 12. 17.]

- 44 (가)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 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 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5. 1.]

8 <개정 2009. 5. 1.>

45 ()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 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5. 1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10. 19.>

1.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이의신청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14. 8. 12.>

[전문개정 2009. 5. 1.]

45 2(가)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 등유: 4십만킬로리터
3. 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 삭제<2015. 7. 29.>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1.]

46 ()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개정 2010. 12. 16., 2013. 3. 23.>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전문개정 2009. 5. 1.]

46 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2. 5. 14., 2013. 3. 23., 2014. 9. 22., 2017. 10. 19.>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12. 16., 2012. 5. 14., 2014. 9. 22.>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3. 9. 1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9. 17.>

[전문개정 2009. 5. 1.]

[제32조에서 이동 <2012. 5. 14.>]

47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4., 2013. 3. 23.>

1.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 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3. 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4.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09. 5. 1.]

- 47 2()**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 5. 14.>
-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 12. 26.>
- 1. 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 2. 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16.]

- 48 ()** 영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전문개정 2009. 5. 1.]

49 삭제 <2017. 10. 19.>

- 5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1.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 2. 제19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 3. 제4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4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9. 22.\]](#)

<제406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